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부 령 : 제168호
공포일자 : 2010. 11. 1
담당부처 : 소방제도과(02-2100-5333)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 부 령 : 제306호
공포일자 : 2010. 11. 5
담당부처 : 건축기획과(02-2110-6206)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공포·시행)됨에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 률** : 제 2010-108호
- 예고기간** : 2010. 11. 18 ~ 12. 8
- 담당부처** : 근로기준과(02-2110-7391)
-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lab.go.kr)

○ 개정이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 (1) 현행은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는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량의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 변화가 큰 업무 등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업무 등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함
- (3)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 축소 및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 (1) 2004년 7월부터 노사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2)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3)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활용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고, 불황으로 인한 수요감시 휴가사용·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수요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

- (1) 연차 유급휴가가 일정 기간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8할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2)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3)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 (1)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를 취한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차휴가의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 (2)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
- (3)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연차휴가의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250호**
공포일자 : 2010. 11. 26
담당부처 : 자격정책과(02-2110-7281)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제안이유**

주무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0336호, 2010. 5. 31.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조사 등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위임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의무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의 대상 및 방법 정비(안 제16조제2항)

- 1) 법률에서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일부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로서 명확하게 규정함.

3)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를 법률의 위임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검정과목 면제 대상자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워드프로세서 직종과 컴퓨터활용능력 직종의 등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으로 서비스 분야 기초사무 분야와 전문사무 분야의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안 별표 5 신설).

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 및 그 수임기관을 정함(안 제29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별표 7 신설).

마.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정비(안 별표 1호의2)

- 1)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중 해당 자격과 연관성 있는 학과가 아닌 대학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 중 실무 경력은 현재보다 1~2년 완화하도록 함.
- 3) 학력에 비해 그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온 실무 경력의 가치를 우대함으로써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아름다운 명언

Your thoughts become your words.
 Your words become your actions.
 Your actions become your habits.
 Your habits become your character.
 Your character becomes your destiny.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이 당신이 행동이 되며,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품성이 되며,
 당신의 품성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당좌수표금 채권 또는 약속어음 할인 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글 _ 박기동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해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Q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甲은 A회사와 실리콘 등의 자재 거래를 하여 오다가 A회사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왔는데, A회사는 甲의 위와 같은 약속어음 할인 등으로 가지게 된 甲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甲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 받았습니디. A회사는 위 액면 3억 원의 당좌수표금 채권 및 甲과 A회사 사이의 약속어음 할인 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과 B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회사는 丙에게 B부동산에 관한 A회사의 위 근저당권의 3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근저당권자를 丙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본인에게 위와 같은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한편, B부동산은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본인이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본인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당좌수표금 채권 또는 약속어음 할인 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A회사가 당좌수표에 관하여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였다거나 늦어도 5년 이내에 상사채권의 청구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귀하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A회사가 丙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무렵 甲이 丙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할 뿐이어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귀하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1. 주상복합 3동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연결 송수구 가압 펌프 150마력짜리 각동에 1대씩 있을 경우(전체 150 x 3 = 450 마력) 발전기 용량 계산에서 150마력 1대만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450마력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50마력으로 계산 시 발전기 용량이 너무 커져 1,500kW가 되어 국내 발전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1동인 150마력으로 계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 질의하신 사항은 소방펌프 구동을 위한 발전기 용량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 전기안전을 위주로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48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에서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정확히 귀하의 질의에 해당하는 사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연결 송수구 가압 펌프 구동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발전기의 용량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부서인 소방방재청이나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6. 29)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있는바 1.항목별 평가기준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설계업체 실적,을 보면 당해설계 및 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범위가 100%에서 250%범위로 정하여 평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 대비 누계실적이 100%인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50%로 기준하여 실적점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소수의 특정업체만의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는 40~100%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왜 100~250%로 규정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며 100%범위에서 실적평가를 하여 다수의 업체에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100%범위로 규정하여도 과업수행에 전혀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제정한 것은 과한규정이라고 판단되오니 명쾌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이 '03.5.19일 제정되었을 당시 설계 및 공사감리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만점비율은 300%이었으나,

• 그 이후 50%를 완화하여 현재에는 250%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공사감리 업계 및 발주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전설 분야와의 형평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사용역실적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6. 18)

3. 주간시인 종합건축감리회사와 분담이행방식으로 CM용역을 참여합니다.

• 용역의 특성상 6개월에서 1년간 설계검토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배치 신고방향을 협의합니다. 이 기간에는 공사업체 확정된 설계도서는 없습니다. 설계검토후 시공단계입니다. 빠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4. 가로등 전선관(PE전선관 또는 PVP전선관)을 관로에는 보도부분에 매설하고 있는데 옆은 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차도측구(콘크리트 포장) 하부에 매설코자 하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감리업자등이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CM방식으로 발주 받은 용역의 경우라도 전력시설물 공사 시작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면 되므로 전기설계도서 검토단계에서부터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원을 배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7. 15)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지중전선로의 시설)에서
-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KS C 3140(전력용케이블의 지중매설 시공방법)에서 관로식(강관 사용의 경우)에서 관의 지름이 200 mm 이하이며, 지표면(포장이 있는 경우는 포장 아래면)에서 깊이 0.3m 이상으로 매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중전선로의 시설방법 및 가로등 시설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 및 제225조제4항 그리고 KS C 3140(전력용케이블의 지중매설 시공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7. 15)